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2900
----------	-------

제출연월일 : 2025. 9. 11.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한 자가 관상어양식업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관상어양식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각각 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관상어양식업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신고와 제5항”을 “신고, 신고증명서의 발급 및 제6항”으로 한다.

⑤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유효기간은 변경신고를 수리(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날부터 제4항에 따른 기존 신고의 유효기간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관상어양식업의 폐업신고) ① 제12조에 따라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한 자가 관상어양식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제12조를”을 “제12조제1항 전단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상어양식업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관상어양식업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등) ① 관상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양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신설>	제12조(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등) ① ----- ----- ----- ----- ----- ----- -----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 . ⑤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유효기간은 변경신고를 수리(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날부터 제4항에 따른 기존 신고의 유효기간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⑤ (생 략)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5항에 따른 예방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관상어양식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3. (생 략)

<신 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 신고, 신고증명서의 발급 및 제6항-----

--.

제12조의2(관상어양식업의 폐업 신고) ① 제12조에 따라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한 자가 관상어양식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과태료) ① -----

--.

1. 제12조제1항 전단을 -----

2. 3.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1. 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상어양식업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관상어양식업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 ----- ----- -----.
---	--